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궁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진흥 시책 마련 등 >
■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739호)

2026. 3.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총괄 검토	3
2. 조문별 검토	7
가.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1조~제4조)	7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한궁지도자 양성 등(안 제5조~제7조)	9
다. 연구·개발, 한궁단체·시설,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등(안 제8조~제14조)	11
라. 한궁협회(안 제15조)	16
마. 부칙(안 부칙 제1조~제3조)	1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박수현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2026. 2. 11.
3. 회 부 일: 2026. 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궁(韓弓)은 우리의 전통무예인 국궁(國弓), 전통놀이인 투호(投壺)와 현대 스포츠인 양궁을 정보기술로 융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활형 스포츠임.

한궁은 신체적 제약이 적어 노인·장애인 등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고, 고령화 시대에 모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활체육임.

또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한궁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육성하여 한류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이에 한궁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한궁 진흥 기본계획, 연구·개발의 지원,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 한궁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나아가 한궁의 세계화에 기

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한궁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며 한궁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의 체계적인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궁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 진흥을 위한 한궁지도자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학교의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체육활동과 연계된 한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장애인의 한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과 한궁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궁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한궁단체·한궁시설, 국제교류·해외확산, 국제기구의 유치 및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바. 한궁지도자와 한궁 관련 종사자 등은 한궁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궁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한궁은 전통무예인 국궁, 전통놀이인 투호와 서양의 타겟 스포츠 종목인 다트 및 양궁을 현대적 방식으로 접목시킨 종목으로¹⁾, 스포츠를 수행하기 위한 신체적 제약이 적어 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국민이 무리없이 즐길 수 있음.

- 한궁 발전과 대중화를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한궁협회가 2009년 창설되어 한궁 보급·홍보, 지도자 양성 및 대회 운영 등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대한체육회에 인정단체로 가입²⁾된 상태임.

또한, 한궁은 경로당·장애인복지관·아동센터 등 다양한 복지시설에 널리 보급되고 있고, 최근 한궁 지도자 육성, 국내외 한궁대회 개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쉽게 접

1) 한궁의 경기방식은 한궁핀을 한궁보드에 왼손과 오른손 각 5회씩 스트레칭 방식으로 투구하여 점수를 겨루는 것임(출처: 대한한궁협회). [참고자료 1] 한궁 경기방법 참조

2) <한궁협회 등 관련 종목 협회의 대한체육회 내 단체 직위 현황>

단체명	회원 직위	대한체육회 가입일
대한한궁협회	인정단체	2021.10.6.
대한궁도협회	정회원단체	1954.3.16.
대한양궁협회	정회원단체	1983.3.4.

* “정회원단체”: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 의결로 회원 가입을 확정된 단체로서 회원단체의 권리(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등)와 의무(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등)를 가짐

* “인정단체”: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단체가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

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³⁾.

이러한 한궁을 체계적으로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한편,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한궁을 세계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육성하여 한류 문화 확산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국가의 한궁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한궁 지도자와 전문인력의 양성, 한궁 보급 및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궁의 진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에 따르면 한궁을 국민 건강 증진 및 고령화 대응에 기여하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정안 입법 여부 및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씨름 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바둑 진흥법」 등 본 제정안과 유사한 구조를 띠며 개별 체육종목에 대해 특별법을 두고 있는 입법례가 존재함⁴⁾.
- 그러나, 한궁을 비롯한 다양한 체육종목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

3) [참고자료 2] 한궁 보급 관련 통계 참조

4) 참고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궁도’ 진흥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궁도 진흥법안」(의안번호 2210101,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2025. 4. 24.)이 발의되어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법」,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통일적 체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각 체육종목에 대해 개별법을 두는 경우 종목별로 지원 가능한 행정적·재정적 자원이 분산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체육종목 진흥 관련 유사 입법례]

「씨름 진흥법」	「태권도법」	「바둑 진흥법」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씨름지도자/씨름시설/ 씨름단체	제2조(정의) 태권도지도자/태권도시설/ 태권도단체	제2조(정의) 바둑지도자/바둑전문기사/ 바둑단체/기보	제2조(정의) 한궁/한궁지도자/ 한궁시설/한궁단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3조의2(대한민국의 국기)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협조)	제6조(협조)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
제7조(씨름의 날)	제7조(태권도의 날)	제7조(바둑의 날)	-
-	-	-	제6조(한궁지도자의 양성 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학생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지원) 제9조(노인복지시설 등과의 연계 지원 등) 제10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8조(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의 지원)	제8조(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11조(한궁단체 및 한궁시설의 지원)
-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제9조(기술개발의 추진)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제18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10조(창업 등 지원)	제13조(국제기구의 유치 지원)
	제19조(국기원)	제11조(연구활동 등 지원)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바둑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제14조(국제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제21조(휘장사업)		제15조(한궁협회)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제24조(과태료)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대다수 체육 종목이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육성·지원되고 있어 한궁에 대하여 개별법을 제정하는 경우 타 종목과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② 한궁의 경우 개별 진흥법 제정을 정당화할 만큼의 인지도, 역사적 상징성 및 국제적 위상이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또한, ③ 「씨름 진흥법」, 「바둑 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진흥법이 제정된 종목은 국가대표성·전통문화적 상징성 또는 산업적 파급력이 인정된 경우에 한정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유사하게 기획예산처는 ① 특정 생활체육 종목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은 곤란하며, ② 한궁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력 양성 및 지원 등은 「생활체육진흥법」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임.

한편 대한궁도협회는 ① 한궁은 궁도와 투호 요소를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창안된 생활체육 종목이므로 현행 체육정책 체계 내에서 진흥이 가능하고, ② 현대 창안 스포츠 종목을 개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경우 전통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과의 정책적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1조~제4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인 국궁, 전통놀이인 투호와 현대 스포츠인 양궁을 접목한 한궁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며 한궁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궁(韓弓)”이란 대한민국의 전통 가치와 현대 정보기술이 융합된 생활체육 종목으로 안전이 확보된 편을 표적판에 왼손과 오른손 각 5회씩 스트레칭 방식으로 투구하여 득점을 겨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포츠를 말한다. 2. “한궁지도자”란 한궁의 보급·교육, 경기 운영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한궁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거나,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 “한궁시설”이란 제11조에 따른 경기장을 포함한 한궁의 교육·경기·연습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한궁단체”란 한궁의 진흥·보급·교육·국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적인 협회·연맹과 그 산하 기구 및 관련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궁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한궁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한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궁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1조(목적)는 한궁의 창안 배경을 알리고 본 법률의 목적이 한궁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2조(정의)는 ‘한궁’, ‘한궁지도자’, ‘한궁시설’, ‘한궁단체’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씨름 진흥법」, 「바둑 진흥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2조제1호의 ‘한궁’ 정의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와 비교할 때 체육종목 자체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⁵⁾, 대통령령을 별도로 마련하여 더욱 세부적으로 정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씨름 진흥법」, 「바둑 진흥법」 등에서는 ‘씨름’, ‘바둑’ 등 종목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한궁지도자 양성 등(안 제5조~제7조)

제 정 안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의 체계적인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궁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궁 진흥의 기본방향 2. 한궁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한궁의 전승을 위한 교육·보급에 관한 사항 4. 한궁지도자 및 한궁선수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5. 한궁시설 및 한궁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한궁 대회 및 스포츠클럽·동호인조직 등의 지원 7. 한궁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8. 한궁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9. 한궁 진흥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10. 한궁시설 및 한궁 관련 행사의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한궁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한궁지도자의 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 진흥을 위한 한궁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한궁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연수, 검정 및 자격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 진흥에 필요한 경기 및

방송, 연구 등 한궁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한궁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궁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한궁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① 5년마다 한궁 진흥의 기본방향, 조사·연구, 지도자·선수 양성, 단체·시설 지원,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②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한궁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안 제6조(한궁지도자의 양성 등) 및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궁 진흥을 위한 한궁지도자와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② 한궁지도자의 자격기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한궁이 생활체육 종목으로서 체계적으로 보급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연구·개발, 한궁단체·시설,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등(안 제8조
~제14조)

제 정 안
제8조(학생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체육활동과 연계된 한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체육활동과 연계된 한궁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체육계열학과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과 연계된 한궁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노인복지시설 등과의 연계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노인·장애인의 한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한궁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 치매예방을 위하여 한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한궁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궁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장려하고 한궁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궁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 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협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한궁단체 및 한궁시설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궁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궁단체와 한궁시설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궁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포함한 한궁 시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의 개최, 한궁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국제기구의 유치 지원) ① 국가는 외국 정부·단체 등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및 행사 개최 등 한궁과 관련된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한궁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기구 유치 조직위원회를 둔다.

③ 국가는 개발도상국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한궁전문가를 파견하거나 한궁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유치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한궁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과 관련된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이 지원되는 국제경기대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8조(학생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지원) 및 제9조(노인복지시설 등과의 연계 지원 등)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특수학교

에서 한궁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한궁 프로그램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기관과 복지시설, 한궁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한궁 체험 및 학습 체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8조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① 초·중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내 신체활동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과의 정합성, 학생의 희망, 학교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활동을 선정하고 있고, ② 특수학교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하여 체육종목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제정안과 같이 특정 신체활동 또는 체육종목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안 제11조(한궁단체 및 한궁시설의 지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궁단체·시설을 지원하고 한궁시설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한궁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체육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⁶⁾에도 규정

6)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

되어 있으므로, 한궁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내용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제13조(국제기구의 유치 지원) 및 제14조(국제경기대회의 개최 지원)는 한궁의 해외확산 추진 사업, 한궁 관련 국제기구 유치, 국제경기대회 개최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한궁의 세계화와 한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궁 관련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안 제13조제2항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스포츠기본법」⁷⁾에 따라 설치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국무총리 소속)에서 생활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 국제경기대회 개최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편, 안 제14조는 한궁 관련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국가가 개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제경기대회 지원

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7) 「스포츠기본법」 제9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주요 시책의 평가·점검,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에서 대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 대회 관련 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궁 관련 국제경기대회 개최 시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르도록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라. 한궁협회(안 제15조)

제 정 안
제15조(한궁협회) ① 한궁지도자와 한궁 관련 종사자 등은 한궁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한궁의 보급·교육 2. 한궁 경기 운영의 지도 3. 한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한궁 관련 경기 규정의 제정·개정 5. 한궁 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6. 한궁지도자 및 한궁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한궁 진흥을 위한 사업 7. 한궁지도자의 자격 부여 8. 그 밖에 한궁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대한한궁협회는 한궁을 전통생활체육으로 정착시키고 한궁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설립된 「민법」상 사단법인⁸⁾으로, 한궁 관련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한궁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안 제15조는 한궁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한궁협회를 특수법인화하려는 것으로, 한궁 진흥과 대중화를 위한 전문적인 실무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8) 2009. 7. 창립 및 2017. 12. 법인설립 허가

마. 부칙(안 부칙 제1조~제3조)

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궁지도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궁 관련 심판 등 지도자는 제6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한궁지도자로 본다.
제3조(한궁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한궁협회(이하 “대한한궁협회”라 한다)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이 경우 대한한궁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안 부칙 제1조(시행일)는 제정안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을 규정한 것으로, 한궁 진흥 기본계획 수립 기초 마련, 한궁지도자 양성, 학생·장애학생·노인 대상 한궁 프로그램의 운영, 한궁단체·한궁시설 지원을 위한 현황 파악 등 본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6개월은 적정한 기간으로 보임.

안 부칙 제2조(한궁지도자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제3조(한궁협회에 관한 경과조치)는 ① 새로운 법정 한궁지도자 자격제도를 도입하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민간자격⁹⁾의 효력을 인정하고, ② 기존의 법

9) 한궁 분야 심판 및 지도자 현황(단위: 명)(출처: 대한한궁협회)

노인한궁부문		장애인한궁부문		한궁생활체육		한궁스포츠인성교육	
대한노인회 소속 심판	7,652	장애인 심판	2,019	지도자 1급	55	한궁스포츠인성 지도자 1,2급	207
한궁노인심판 한궁심판 3급	1,737			지도자 2급	460	한궁체인지 문화지도자 2급	22
한궁노인 치매강사 2급	141			지도자 3급	5,683	한궁전문강사	29
한궁노인 치매강사 1급	35			소계	6,198	소계	258
소계	9,565	소계	2,019	소계	6,198	소계	258
총 계	18,040						

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법인과 구법인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 1] 한궁 경기방법(출처: 대한한궁협회)

□ 투구자세 및 순서

- 한궁편을 한궁보드에 왼손, 오른손 각 5회(총 10회) 투구하여 높은 점수를 낸 선수가 이기는 경기방식

투구자세

한궁 대회에선 **측면형 투구자세**를 기본으로 합니다. 단, 신체 조건상 한 쪽 팔만 사용 가능한 경우, **혼합형(측면형 5회, 정면형 5회)** 투구자세로 투구 할 수 있습니다.



측면형 투구자세
*대회 기본자세



정면형 투구자세

투구순서

- 1) **조준**: 팔을 펴서 한궁과녁판의 중심과 한궁편, 눈을 일직선 상에 놓는다.
- 2) **준비**: 조준된 상태에서 한궁편을 눈앞으로 천천히 잡아당긴다.
- 3) **시작**: 눈앞에서 한궁편을 잡은 손을 한궁과녁판 중앙을 향해 팔을 쭉 펴며 투구한다. 투구 후 팔을 뺀 상태에서 1초간 멈춘 후 팔을 서서히 내려 준다.



□ 한국의 한궁과 영국의 다트 비교

투구법		투구핀	경기규정		
[한궁] 스트레칭 방식 측면형 투구 양발 지면 밀착	[다트] 손목 스냅 이용 앞쪽으로 기울여 투구	[한궁] 헤드가 평평한 안전한 한궁핀 ▶ 안전성 ↑ / 부상위험 ↓	[다트] 끝이 뾰족한 스틸 또는 소프트 팁	[한궁] ① 1~10점(양궁 점수체계) ② 오른손/왼손 각5회 총10회 ③ 합산 점수 누계로 승패	[다트] ① 1~20점(더블/트리플/볼렛) ② 한 손으로 3회 투구 ③ 301, 501, 701점 감산 → 0점

[참고자료 2] 한공 보급 관련 통계(출처: 대한한공협회)

□ 한공 동호인 인원 추정치

구분	내역	수량, 횟수	활용범위 (추정치)	동호인수(명) (추정치)
한공 보급 장소	경로당	30,050	×30명	901,500
	노인복지관	40	×100명	4,000
	장애인복지관	100	×100명	10,000
	학교/장애인	40	×50명	2,000
	아동센터	50	×25명	1,250
한공 지도자 육성· 교육	한공생활체육지도자(1·2·3급)	6,198	×100명	619,800
	한공노인심판	9,389	×60명	563,340
	한공장애인심판	2,019	×10명	20,190
	한공스포츠인성지도자	229	×30명	6,870
	한공노인치매강사(1·2급)	176	×60명	10,560
노인 한공대회	시군구노인한공대회 분회대회, 전국대회	400회	×250명	100,000
장애인 한공대회	시군구장애인어울림대회 장애등급별한공대회	30회	×300명	9,000
학교 한공대회	학교한공대회, 스포츠클럽	12회	×200명	2,400
세대공감 한공대회	세대공감한공대회 교육가족인성실천한공대회	11회	×250명	2,750
치매예방 한공대회	전국노인치매예방한공대회	3회	×300명	900
해외 한공대회	TAFISA, 일본 젠시렌, 전미주장애 인체전, 인도 국제한공대회등	5회	×150명	750
K-한공 홍보축제	KOREADAY 행사, 남북통일한공대회, 시군구한공축제, 국제농업박람회 등	10회	×400명	4,000

□ 한공 심판, 지도자 현황

(단위: 명)

노인한공부문		장애인한공부문		한공생활체육		한공스포츠인성교육	
대한노인회 소속 심판	7,652	장애인 심판	2,019	지도자 1급	55	한공스포츠인성 지도자 1,2급	207
한공노인심판 한공심판3급	1,737			지도자 2급	460	한공체인지 문화지도자 2급	22
한공노인 치매강사2급	141			지도자 3급	5,683	한공전문강사	29
한공노인 치매강사1급	35						
소계	9,565	소계	2,019	소계	6,198	소계	258
총 계	18,040						